#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3 발의연월일: 2020. 8. 12.

발 의 자 : 허 영·강선우·이병훈

김수흥 • 박상혁 • 김경만

강훈식 · 정일영 · 이개호

전용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추가로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여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의 제목 중 "대도시에"를 "대도시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대도시"를 "대도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 2.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 ②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5조( <u>대도시에</u> 대한 특례인정)	제175조( <u>대도시 등에</u> 대한 특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인정) ①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u>대도시</u> 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	<u>대도시 및 다음 각 호</u>
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이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하 "특례시"라 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u>&lt;신 설&gt;</u>	1.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u>도청소재지인 시</u>
	<u>2.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u>
	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
	<u>정하는 시</u>
<u>&lt;신 설&gt;</u>	②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